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69
----------	-------

발의연월일 : 2025. 11. 26.

발 의 자 : 이용우 · 임미애 · 김우영
박해철 · 박민규 · 김남희
김한규 · 김남근 · 이학영
이강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사법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사·검사·경찰관 등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사례들이 반복되어 왔음.

현행 형사법 체계에는 이러한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 별도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판결·기소·불기소·수사 등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이 가하는 결정들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해당 결정의 근본적 공정성과 적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여, 판사·검사·사법경찰관 등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인멸·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지시·요구·청탁하는 행위 등을 행사책임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사법제도에 대해 갖는 불신을 해소하고 선진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법왜곡) ①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 재판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증거를 인멸 또는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
2. 적용해야 함이 분명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적용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수사 등 사건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켜 직무수행을 유기한 경우

② 인사권 또는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제1항의 행위를 지시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1항의 행위를 요구 또는 청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23조의2(법왜곡) ①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 재판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증거를 인멸 또는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u> <u>2. 적용해야 함이 분명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적용한 경우</u> <u>3.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수사 등 사건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켜 직무수행을 유기한 경우</u> <p><u>② 인사권 또는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제1항의 행위를 지시한 경우에도</u></p>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1항의 행위를 요구 또는
청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